

#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

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·시행(제29317호, 2018.12.4.)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·시행(제29059호, 2018.7.24.),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(제2018-49호, 2018.7.24.)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□ 발급내용

### ○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

대상	·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%이상인 <b>인증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</b>			
취약계층 고용비율	· (전체 취약계층근로자/전체 유급근로자) X 100			
근로자 인정기준	유급근로자 기준	·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(상시고용)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※ 예) 발급신청(2020.7.20.)		
		<b>구분</b>	<b>고용보험 가입일</b>	<b>고용보험 가입일수</b>
		<b>유급근로자 인정</b>	2020.1.22.	180
	<b>유급근로자 불인정</b>	2020.1.23.	179	
	취약계층 근로자	고용보험가입(상시고용) 일수가 <b>180일</b>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		
	※ 취약계층 대상: 저소득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청년·경력 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가정폭력 피해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결혼이민자, 갱생보호 대상자, 범죄구조피해자, 기타			
기타	·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			

- 증명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80일
- 증명서 발급일(처리기간) : 신청일(홈페이지 접수일)로부터 15일 이내

## □ 발급절차

- 신청서 양식,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,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, 유급근로자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취약계층 증빙서류\*를 홈페이지로 접수
- 협동조합 홈페이지(www.coop.go.kr) → 로그인(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) → 운영안내 →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→ 서류 업로드 및 등록하기

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반환되며, 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제출서류

-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 (양식 작성)
-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유급근로자 전체가 각각 작성) 일체
-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주민번호 뒤의 6자리 가리고 제출)
-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서류(주민번호 뒤의 6자리 가리고 제출)